

버터플라이 밸브

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49668 (2025.06.17.)
- 쟁 점 사 항: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한국
- 최종 원산지: 한국



II 사실관계

용도	• 산업시설의 배관에 설치되어 유로를 개방하거나 폐쇄하는 역할을 수행		
재료		중국	• 밸브 몸체 주조물 • 디스크 주조물 • 클램프 링 주조물
		한국	• 시트 • 샤프트 • 베어링 • 디스크 핀 등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Sourcing ▾  중국  몸체, 디스크, 클램프 링 주조 → Manufacturing ▾  한국  STEP 1 중국산 주조물 수입 STEP 2 몸체, 디스크, 클램프 링에 대해 기계가공 STEP 3 시트, 샤프트 등 생산 STEP 4 최종 조립 → Export ▾  한국 최종 수출		
	상세 공정		중국
		한국	• 중국산 몸체 주조물에 접촉면 가공, 내경 가공, 표면 밀링 등 기계가공 • 중국산 디스크 및 클램프 링 주조물에 내경, 외경 등 기계가공 • 시트, 샤프트 등의 기타 부품 생산 • 최종 조립

III 판정 결과

《CBP의 판정》

☉ 밸브의 원산지는 핵심 구성요소인 몸체가 어느 국가에서 실제로 형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함

- ㉠ 중국에서 수입될 당시의 몸체는 다른 부품과의 접촉면, 내경 등이 정밀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주조물에 불과하며, 한국에서의 기계가공 및 마무리 공정을 거쳐야만 실제 밸브 몸체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, 완성된 버터플라이 밸브의 원산지는 한국임

→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

IV 시사점

- ㉠ CBP는 밸브의 최종 조립은 일반적으로 서로 삽입하거나 나사로 조이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로 판단하는 바, 밸브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, 핵심 구성요소인 몸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함
- ㉡ 이때, 몸체의 원산지는 주조물이 실제 밸브 몸체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정밀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함

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버터플라이 밸브
사례번호	NY N355399 (2025.11.20.)
쟁점사항	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• [중국] - 완성된 형태의 밸브 본체를 생산하여 헝가리로 수출 • [기타 국가] - 밸브 생산에 사용되는 기타 부품을 생산하여 헝가리로 수출 • [헝가리] - 최종 조립 수행
판정 결과	• 통상 밸브 구성품은 삽입, 압입, 나사 체결 등을 통해 밸브 본체에 조립되며, 이러한 공정들은 밸브 본체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• 중국에서 생산된 밸브 본체는 헝가리로 반입되는 시점에서 유체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기타 부품과 결합될 수 있는 최종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, 버터플라이 밸브의 원산지는 본체가 생산된 중국임

유의사항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